

■ 간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

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5일
신청인	성명	사진 (3.5cm×4.5cm)
	주민등록번호	
	주소	
	연락처 (전화번호) (전자우편주소)	
자격번호	자격일자	발급기관
신청사유	[]분실 []훼손 []기재사항 변경(변경내용:) []기타()	

「간호법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분실·훼손,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	자격 취소 후 재발급	수수료 (수입인지) 2,000원
	1. 자격증(혈어 못 쓰게 된 경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) 2. 사진(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, 가로 3.5cm×세로 4.5cm) 2장 3.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1. 자격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거나 개전(改悛)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2. 사진(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, 가로 3.5cm×세로 4.5cm) 2장	

처리 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내용 확인	➔	자격증 작성	➔	자격증 발급
신청인		보건복지부 (분실·훼손,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) 시·도 (자격 취소 후 재발급의 경우)				처리기관: 보건복지부		